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413
------------	------

2026. 3. 3.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2. 9. 이민석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6. 2. 12.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6. 3. 3.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이민석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참여 기회 및 신청대상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창의적인 건축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여 대상지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 대상지 신청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건축설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가. 설계의도 구현(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설계자의 건축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킬수 있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생략) <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창의적·혁신적 건축디자인이 시공 과정 중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협약 체결 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현재,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1)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물등 공사에,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이하 ‘법’)제25조제12항2)에 근거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³⁾에 한해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⁴⁾시키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비 1억원 이하 소규모 공공건축물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이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는 건축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2)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3)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택외의 용도가 복합된 공동주택과 연면적 200㎡이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을 포함

※ 공동주택은 분양 및 임대목적, 세대수 등에 상관없이 모두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임. 단,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법 제25조제2항 및 제10항, 영 제19조의2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사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함(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종교·판매·운수·의료·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8조제1항

4) (민간건물) 착공신고 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와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함(법 제25조제13항, 영 제19조의2제8항)

(공공건물) 사용승인시 참여설계자 확인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시행령 제19조제4항, 시행규칙 제6조)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건축물>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정하는 건축물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p>※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자원순환, 교정시설, 군사국방시설, 방송통신, 발전시설, 묘지관련 시설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 연면적 200㎡이하 주택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p>※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한함</p>

- 이에, 대부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민간 대형 주거복합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을 사업대상(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으로 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이하 ‘혁신사업’)의 경우 현행 법령상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의무가 부재한 상황으로 혁신디자인의 설계의도 구현이 담보되지 않는 실정임.

○ 안 제3조제2항은 이러한 법령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의 책무에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혁신사업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나. 사업 대상지 선정 등(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예외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외대상 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혁신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1. (생 략)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다만, <u>존치관리구역은 예외로 한다.</u> <신 설> ③ <u>사업 대상지는 공모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u>	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단서 삭제> 3. <u>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u> ③ <u>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u>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u>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u>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중 <u>존치관리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u>

- 현재 조례상 사업 대상지는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건축기준 특례사항을 적용⁵⁾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존치관리구역은 포함) 하되, 공모를 통해 선정할 지역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사업인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제외)⁶⁾과 ‘사전협상 대상

5) 「건축법」 제70조 및 시행령 별표3(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지'7)에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함.

-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것은 대규모 단지형 주택개발 사업에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지양하려는 의도이나, 주로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 주거 이외 또는 복합용도로 개발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⁸⁾도 함께 제외됨에 따라, 이를 예외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역세권,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개선과 도시경쟁력 제고 효과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 4대문안의 도심지역 42개소, 도심 외 지역 39개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43개소로 총 124개소가 있고, 시

6)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대상지)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등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역을 포함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면적·노후도·접도조건을 포함한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책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활성화 사업이 17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65개소가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진행 중인 3개소까지 총 209개가 추진 중임(검토보고서 붙임4 참고).

- 이 중 혁신사업 적용이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은 115개소로 확인되나,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2개소를 제외하면, 총 93개소가 실질적인 혁신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향후 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사업추진 단계	정비구역내		재정비 촉진지구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심부	도심 외				
사전검토	X	X	X	X	X	18
주민제안	X	X	X	X	X	24
정비계획 수립중	9	11	19	13	1	19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10	10	14	4	2	3
관리처분인가 준비중	5	9	4	-	-	-
착공준비중	6	4	1	-	-	1
공사중	12	5	5	-	-	-
합 계	42	39	43	17	3	65

- 한편,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사업대상지 제외 구역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유형 중 주거단지 포함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특히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 2025년 10월 운영기준⁹⁾을 개정하여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미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주관부서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¹⁰⁾하도록 변경했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현재 혁신사업 대상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등 운영기준을 통하여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혁신사업 대상지로 포함할 경우도 현실적인 제약사항 등을 시장이 운영기준에 반영하도록 위임한 것임.¹¹⁾

다. 사업 대상지의 수시접수(안 제5조제4항)

- 현재 사업 대상지의 선정은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차례의 공모절차를 거쳐 2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음.

9)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2025.10.31.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제3장 제2절 용적률 기준

3-2-2. 아래의 항목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가산할 수 있다. 단,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중첩하여 완화 받으려는 경우 지원 자문단 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 4)에 따라 창의·혁신 디자인 건축물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완화는 미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공간본부 및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주관부서**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모두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함.

11)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방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또는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통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개별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협상대상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④ 시장은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그러나, 공모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공모일정에 맞추면서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업 대상지의 선정을 ‘수시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수시 접수방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상지 선정요건 및 절차, 신청양식 등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구 분	1차공모 결과 (`23.4.19.)	2차공모 결과 (`23.12.28.)	3차공모 결과 (`25.2.17.)
개 소	10개	9개	4개
대상지	① 이마트부지(성수동) ②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역삼동) ③ 리버사이드 호텔부지(잠원동) ④ 대일화학 사옥예정지(관철동) ⑤ 프리마호텔부지(청담동)(선정 취소) ⑥ 여번 플라타너스업무시설(효제동) ⑦ 도화서길 업무시설(수송동) ⑧ 테라스형 주거시설(청담동) ⑨ 크라운호텔 부지(이태원동)(선정 취소) ⑩ 크리에이티브 오피스텔(망원동)(선정 취소)	① 갤러리아 백화점부지(압구정동) ② 나진상가 부지(용산 한강로3가 1-3) ③ 나진상가 부지(용산 한강로2가 15-13) ④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서초동) ⑤ 복합업무시설(삼성동) ⑥ 5제로타워 오피스텔(청담동) ⑦ 복합주거시설(한남동) ⑧ 복합판매시설(신사동) ⑨ 삼표레미콘부지(성수동)	① 복합주거시설(양평동4가) ② 빗썸사옥(대치동) ③ 복합개발사옥(성내동) ④ 더케이호텔(양재동)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혁신사업을 통한 창의적인 건축문화 확산과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보장과 함께, 사업 대상지 범위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 대상지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등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혁신적인 건축물의 확산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관의 개선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수립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 계획”¹²⁾에서 주거혁신 대책으로 ‘성남갑 아파트 퇴출’과 ‘저층주거지 한층 더 예쁜집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주거단지의 경우도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에 대한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화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사업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 중 3곳이 실무협의회 개시 후 2년간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시하지 않아 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상태이므로, 제도운용 및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음¹³⁾.

12)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1호(도시공간기획담당관-2217, 2023.3.3.)

13) 총 22개소 중 3개소가 취소되고 사전협상대상지인 양재동 복합개발(더케이호텔) 1개소가 선정되며 현재 20개소에서 사업 시행 중(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자구수정 : 안 제3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를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로 하고, 조례 제6조제1항 중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함.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혁신적 건축디자인이 시공 과정 중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협약 체결 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중 준치관리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④ 시장은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창의적·혁신적 건축 디자인이 시공 과정 중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협약 체결 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u></p>
<p>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p> <p>1. (생 략)</p> <p>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 구역. <u>다만, 존치관리구역은 예외로 한다.</u></p> <p><u><신 설></u></p> <p>③ <u>사업 대상지는 공모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u></p>	<p>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단서 삭제></u></p> <p>3. <u>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u></p> <p>③ <u>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u></p>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협상대상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사업제안서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중 존치관리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④ 시장은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하여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제안서 제출 등) ① --

--- 사업시행자-----

-----.

② (현행과 같음)